오산시 창의 1인성 1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

제정 2015년 11월 16일 조례 제1441호 일부개정 2019년 11월 8일 조례 제1758호 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기본법」, 「인성교육진흥법」,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및 「진로교육법」에 따라 창의·인성·진로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올바른 인성 및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9. 11. 8〉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19. 11. 8〉

- 1. "교육"이란 오산시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- 2. "창의교육"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.
- 3. "인성교육"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·공동체·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.
- 4. "진로교육"이란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·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 업, 진로심리검사, 진로상담, 진로정보 제공, 진로체험,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오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・인성창의・인성・진로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9. 11. 8〉② 시장은 창의・인성・진로교육에 적합한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9. 11. 8〉 제4조(차별금지) 시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・장애여부・소득수준 등에 따른

오산시 창의 · 인성 ·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

차별 없이 창의·인성·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9. 11. 8〉

- **제5조(사업의 범위)** 시장은 창의·인성·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〈개정 2019. 11. 8〉
 - 1. 문화·예술·체육(미술, 음악, 무용, 연극, 연예(演藝), 문학, 사진, 건축, 출판, 만화. 체육)체험 사업
 - 2. 학생의 진로 탐색·설계에 필요한 진로상담, 직업체험, 진로캠프, 진로특강, 진로 교육 사업
 - 3. 생명안전 체험 사업
 - 4. 예, 효, 정직, 책임, 존중, 배려, 소통, 협동 등의 가치 또는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사업
 - 5.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
- 제6조(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) ① 시장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진로진학상 담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진로상담 지원
 - 2. 진로 프로그램 개발
 - 3.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
 - 4. 진로진학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
 - 5. 진로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
 - 6.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9, 11, 8]

제7조(보조금의 지원)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[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. 11. 8]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, 정산, 감독 등의 사항은 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[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. 11. 8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9. 11. 8 조례 제1758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